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호의원 대표발의)

의번 안호 217

발의연월일 : 2008년 2월 22일
발의자 : 이종호 · 김환동 · 조영재 · 연만흠
이필용 · 강태원 · 박재국 · 민경환
이대원 · 박종갑 · 이규완 · 이영복
정윤숙 · 이범윤 · 이기동 · 최재옥
박영웅 · 임현 · 이언구 · 김인수
송은섭 · 오용식 · 최미애 · 최광옥
김화수 · 장주식 · 권광택 · 심홍섭
김법기 · 한창동(30인)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조성위원회 설치 등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조례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 1)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제천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3)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 1)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의 지원사업 범위를 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 특수목적고 및 어학타운 설립 지원, 그 밖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기대됨.

라. 연수기관유치추진단 및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 1) 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인력과 연수타운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 2) 도지사 소속하에 연수기관유치추진단 및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3) 연수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고, 연수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시행규칙 및 시행일(안 제8조 및 부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참고자료

- 가. 관련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함.
- 다. 관련부서 협의 : 의견 없음(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

조례 제 호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종합연수타운”이란 제천시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조성하는 연수기관의 집단화 지역을 말한다.
2. “연수기관”이란 공공기관·단체, 기업체가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이란 공공기관·단체가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연합하여 설치·운영하는 연수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천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3.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5. 기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가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기관유치추진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입주할 연수기관 유치를 위하여 연수기관유치추진단(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천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11(생략)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003. 5. 16)